

看護行政機構와 看護事業



金 珠 熙

<한양의대 간호학과장>

西歐諸國(英, 獨, 佛)의 경우

이 글은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간호원제도에 관하여 종래 조사된 것을 정리 취합한 것이다. 각국의 간호원제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주로 법제, 간호원의 종류와 수, 자격요건, 양성제도, 근무조건, 근로사정의 항목으로 나누고 다시 그 주 항목을 적절히 세항목으로 분할하였다.

국가별 항목별에 있어서 그 설명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은 각국에 대한 자료수집상의 제약때문이며 부득이한 일이었다.

● 西歐諸國의 경우

◇ 英 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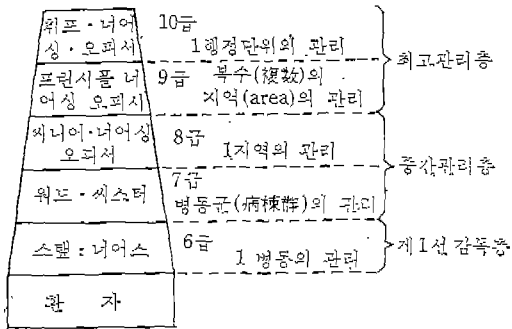
1. 국민보건 서비스와 간호원 관리기구의 개혁

영국의 보건, 의료 서비스는 4반세기에 걸쳐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에 의거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새로이 1973년 국민보건서비스재조직법이 제정되어 197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구법하에서는 의료서비스는 일반의(가정의), 병원, 지방병원서비스의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각 별개의 관리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 개혁에 의하여 이것이 일체화되고 지역별로 통합화된 관리기관(보건당국)에 의하여 운영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간호스텔의 관리도 각 보건당국의 통합화된 관리 팀이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병원내에서의 간호관리기구에 관하여는 1966년 「싸아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자 그에

의거하여 1968년 10월부터 각 병원에 이 싸아몬 기구가 도입되었다. 현재 국민보건서비스에 거의 모든 병원에서 「싸아몬」기구에 의한 관리체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관리의 질을 향상시켜 간부 간호원에게 보다 좋은 관리교육을 행함으로써 집중적인 환자의 간호, 간호원의 병원운영에 대한 효과적 공헌, 간부 간호원의 지위 향상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기구의 도입에 의하여 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화 되었다. 종래의 「메트론」(간호원장) 등의 명칭은 없어지고 「취프·니어싱·오피서」(CNO, 10급직)을 정점으로 하여 「프린시플·니어싱·오피서」(PNO, 9급직) 「씨니어·니어싱·오피서」(SNO, 8급직) 「니어싱·오피서」(NO, 7급직) 「차이지·니어스」 또는 「워드·씨스터」(6급직)에 구성되어 있다. 상급의 등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는 그 등급에 따라 4주 간 내지 1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제1도 참조)

(제1도) 싸아몬 기구



2. 법제(法制)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간호원제도에 관한 주된 법률로서는 1957, 1961, 1964, 1969의 매년의 간호원법이 있고, 간호원의 등록, 양성에 관하여는 1969년 간호원규칙, 1969년 준등록간호원규칙, 1973년 간호원 및 준등록간호원(개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은 일반간호협의회(General Nursing Council for England and Wales)가 사회 서비스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간호원의 종류와 인수

영국의 간호스텝은 병원근무자와 지역담당자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에 대하여만 설명하기로 한다.

병원근무의 간호스텝은 이미 자격을 얻은 간호원, 양성기간중에 있는 자 및 무자격의 간호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자격 간호원에는 등록간호원(registered nurse)과 준등록간호원(enrolled nurse)의 2종이 있고, 그중 등록간호원에는 일반간호원, 정신과간호원, 정신박약과간호원, 소아과간호원의 종류가 있으며 또한 준등록간호원에는 일반간호원, 정신박약과간호원의 종류가 있다. 양성기간중에 있는 자에는 등록간호원 코스에 재학중인 간호학생(student nurse)과 준등록간호원 코스에 재학중인 간호생도(pupil nurse)가 있고, 이 양자가 다 같이 임상실습으로서 장기간 실제의 병원간호를 담당하여 병원간호체계의 일익을 차지하고 있다. 무자격의 간호요원으로는 급성병원근무의 간호보조자

[제1표] 간호요원수

간호요원	계			
	총 수	풀·타임 해당수(1)	「풀·타임」 근무수	「파트·타임」 근무수
총 수	291,723	251,778	182,116	109,607
등록 간호원	89,607	76,057	57,214	32,393
간 호 학 생	51,546	51,518	51,436	110
준등록간호원	45,685	39,327	25,772	19,913
간 호 생 도	22,661	22,287	21,111	1,550
기타간호요원	82,224	62,590	26,583	55,641

자료: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Annual Report, 1973"
 주: (1) 풀타임(Full time) 근무자수와 파트·타임(Part time) 근무자와 기타 동종한 자의 수의 합계

(nursing auxiliary)와 정신병원근무의 간호조수(nursing assistant)가 있다.

1973년 9월 30일 현재의 잉글랜드의 병원근무 간호원수는 [제1표]와 같다.

4. 간호원양성제도와 자격요건

1972년 간호에 관한 위원회보고서(Briggs Committee Report)가 나와 통합된 국민보건서비스하에서의 병원 및 커뮤니티에 있어서의 간호원 및 조산원의 역할과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의 요건에 대하여 건의된 것이 있다. 현재 이 개혁안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현행의 제도와 건의내용을 아울러 설명하기로 한다.

(1) 간호원양성에 관한 기관

간호원 양성의 책임이 있는 기관은 일반간호협의회로서 간호원의 등록, 자격요건 양성기관의 기준의 책정등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사회 서비스장관, 문화부장관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 및 등록간호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에는 지방간호원양성위원회(regional nurse-training committee)가 설치되어 있고 그 지방에 있어서의 간호원양성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고찰, 조사하고 또 양성기관에 대하여 조언, 원조하는등의 임무를 지니고 있다.

브릭스, 레포르트는 일반간호협의회 대신에 중앙간호조산협의회를, 또 각 지역에 간호, 조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2) 양성기관 코스

간호원 양성을 위한 일반적 기관으로서의 등

목간호원양성학교와 준등록간호원양성학교가 있는데 전자에는 일반, 정신과 정신박약과, 소아과의 4종의 학교가 있고, 후자에는 일반, 정신과, 정신박약과의 3종의 학교가 있다. 이러한 간호원학교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교육코스가 있다.

(가) 왕립(王立)의학심리학협회가 3년간의 교육 후에 간호원 증서(정신과, 정신박약과)를 주는 제도

(나) 대학의 간호학의 학위를 얻기 위한 졸업전의 교육 코스

(다) 대학의 학위를 얻은 자가 간호에 관한 훈련을 하는 졸업후의 교육 코스

(3) 양성학교에의 입학자격요건

등록간호원 코스와 준등록간호원 코스의 입학연령은 18세이상(1개월후에 18세가 되는 자를 포함한다)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학력이 있어야 한다.

(가) GCE(일반교육자격)의 성적이 O레벨(Ordinary level)이거나 CSE(중등교육자격)를 2과목이 1급의 성적으로 패스하고 또 소정의 학교 교육을 받은 자

(나) 위와 동등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

(다) 협의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패스한 자

「브릭스·레포르트」는 입학연령을 1975년까지 17세로 인하할 것과 GCE의 성적만으로 적성을 결정하지 말고 광범위한 응모자중에서 선택할 것 등을 건의 하고 있다.

(4) 기간과 교과과정

양성기간은 원칙적으로 등록간호원은 3년(156주) 준등록간호원은 2년(104주)인데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그 기간이 단축된다.

「브릭스·레포르트」는 간호원면허증을 얻기 위한 최저 기준으로서 18개월의 기초적 교육을 제안하여 교육기간의 단축화를 기도하고 있으며 한편 그 후의 교육에 대하여는 개인적 필요도 또는 능력에 따라 희망하는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보다 높은 교육 과정으로 나아가는 자격을 얻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현재 교육의 합리화, 효율화를 위하여 소규모의 간호학교의 통합화가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간호 학교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가) 등록일반간호원 과정의 경우

간호의 원리와 실제, 응급처치(비상시의 처치를 포함함) 병동조직 및 관리입문, 인간학, 자연론(Concepts of the nature) 및 질병의 원인(응용해부학 및 생리학을 포함함), 진찰 및 치료, 간호, 사회적 측면, 재활

(나) 준등록일반간호원의 경우

간호의 원리와 실제<입문 : 간호의 발달, N.H.S. (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보건서비스>의 개요 및 NHS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지위, 간호의 원리와 실제, 응급처치, 인간과 간호(개인의 인격발달, 개인위생 및 공중보건의 증진과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기초적 지식), 질병의 원인, 경과 및 치료의 개요(환자에 대한 간호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의 질병의 원인 및 치료의 원칙에 관한 기초적 지식)

통합화된 보건사업하에서는 병원간호와 지역사회간호의 일관된 연속성이 요구되고 또 브릭스·레포르트도 지금까지의 “업무의 할당”(task allocation)에 의한 간호로부터 “환자의 전체적 간호”(total patient care)의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이후의 간호교육은 지역사회간호를 포함한 교과과정(curriculum)이 증대되게 될 것이다.

(5) 시험 및 등록요건

등록간호원, 준등록간호원과정은 다같이 소정의 교육을 거쳐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이 시험은 각각 전기의 교과과정(curriculum)에 대하여 행하여지지만 73년의 규칙개정에 의하여 양 과정이 다같이 실제간호능력,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두부문에 관하여 행하도록 되었다.

또 이전에는 자격요건으로서 등록간호원은 21세이상, 준등록간호원은 20세 이상등의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역시 73년의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6) 졸업후의 교육

「브릭스·레포르트」는 양성후의 교육으로서 출

업후의 교육코스, 현직에 있지 않는 유자격자를 위한 입상 코스, 해외에서 온 간호원을 위한 가이던스·코스, 간호보조자 코스의 확충을 제언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인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양성수당

영국의 간호학생, 생도는 장기간 실제의 병원 간호에 나아가야 할 사정도 있어 학생, 생도에 대하여 수당이 지불된다. 1974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수당년액은 [제 2 표]와 같다.

[제 2 표] 간호학생, 생도의 양성수당

(1974년 4월 현재) (단위: 파운드)

간 호 학 생	간 호 생 도
(1) 등록연령 21세미만의 경우	(1) 등록연령 21세미만의 경우
18세 816	18세 816
19세 891	19세 891
20세 936	20세 936
(2) 등록연령 21세이상의 경우	(2) 등록연령 21세이상의 경우
1년도 1065	1년도 1065
2 " 1098	2 " 1098
3 " 1131	

자료: "Nursing Mirror" 1974. 7. 19

주: 1파운드=1, 019. 79원

5. 급여와 근로조건

(1) 급 여

1974년 4월 1일부터 호이트협의회<전국 노사 대표 협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새로운급여표가 실시되었는데 다른 직종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급여인상의 요구가 강하며 9월 17일, "간호원 및 조산원의 급여와 근로조건조사 위원회"(홀스베리 위원회 레포오트)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평균 약 30%의 인상을 시도한 급여액이 건의되었고 정부는 이를 앞으로 받아 드릴 것을 약속하였다. 급여는 직종별, 등급별

[제 3 표]

간호직의 급여

(단위: 파운드)

	간호직의 명칭	「호이트」리협의회 급여액 (74. 4. 1 실시)	「홀스베리」위원회 권고 (74. 9. 1 건의)
지방, 지역에, 지구에 있어서 의 례·메니지먼트	지방(리퍼널)·니어싱·어피서	6, 450~7, 473	7, 080~8, 001
	지역(에어리어)·니어싱·어피서	4, 821~6, 891	5, 715~7, 545
	지구(디스트릭트)·니어싱·어피서	3, 723~6, 519	4, 785~7, 290
지방, 지역에 있어서의 미 들·메니지먼트	지방 너어스	4, 311~5, 232	5, 310~6, 150
	지역 너어스	3, 894~4, 896	4, 950~5, 880

로 상세히 정하여져 있는데 그 대강은 제3표와 같다. 이 기본액에 덧붙여 근로조건, 자격조건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2) 근무시간

병원근무를 하는 간호의 평균 근무시간은 현재 1주 40시간 5일 근로제이다.

(3) 근로사정—간호원부족

영국에 있어서도 세계 각국의 예와 같이 간호원부족이 심각하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병동을 폐쇄하는 병원도 생기고 있다. 간호요원의 부족은 특히 정신병원, 신체장애자시설등에서 심각하고 또 야간 및 주말에 심하다. 한편 작년에는 보건사업 종사자연맹의 회원인 간호원들이 임금인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키는등 큰 사회문제로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급여수준의 인상, 간호교육제도의 충실, 근무조건의 개선등에 관한 장래성 있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지만 간호원 부족의 해소는 용이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참고자료>

1. The Nurses Act. 1957, 1961, 1964, 1969.
2. The Nurses Rules, Approval Instrument 1969 (S. I. 1969/1675)
The Enrolled Nurses Rules, Approval Instrument 1969 (S.I. 1969/1674)
The Nurses and Enrolled Nurses (Amendment) Rules, Approval Instrument 1973 (S.I.1973/1077)
3. Report of the Committee on Senior Nursing Staff Structure (Salmon Committee Report) HMSO, 1966.
4. Report of the Committee on Nursing (Briggs Committee Report), HMSO, 1972.

병원 담당 간호직	치이프·니어싱·어피서	3,381~4,881	4,380~5,880
	프린시플·니어싱·어피서	2,667~3,810	2,420~4,710
	씨니어·니어싱·어피서	2,328~2,949	2,961~3,756
	니어싱·어피서	2,070~2,610	2,670~3,405
	워드·씨스터	1,632~2,097	2,262~3,000
	스텔·니어스	1,338~1,551	1,692~2,202
	준등록간호원	1,203~1,383	1,452~1,902
	간호보조자	816~1,233	1,116~1,521
컴뮤니티담당간호직	지구 너어스	1,521~2,037	2,262~3,000
	헬스·비저터(방문간호원)	1,686~2,154	2,670~3,300

자료: "New Salary Scales" Nursing Mirror, July 19, '74.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ing into the pay and related conditions of service of nurses and midwives (Halsbury Committee Report)" Nursing Mirror, Sep. 26, '74.
 주: 1파운드=1,019.79원(75. 9. 14현재)

● 西歐諸國의 경우

◇ 西 獨

1. 법 제

간호종사자에 관한 주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요원법—간호전문직의 자격, 요건 및 양성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
 (2) 간호원, 소아간호원양성·시험령—간호원, 소아간호원의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curriculum) 및 시험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
 (3) 간호보조원양성·시험령—간호보조원의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및 시험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
 (4) 간호요원령—간호학생의 질병보험 및 책임보험의 비용은 간호학교의 경영자가 부담할 것을 정한 것

2. 간호종사자의 종류와 수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는 전문직으로서 국가의 면허를 받은 간호원(Kinderkrankenschwester), 간호사(Krankenpfleger), 소아간호원(Kinderkrankenschwester), 간호보조원(Krankenpflegehelferin, Krankenpflegehelfer)과 그 밖에 유아보호(Sänglingspflegerin), 보모(Kinderpflegerin) 등의 무자격자가 있다. 이러한 자는 각지의 병원, 진료소, 지역보건소, 자가정, 각종 시설에서 질병에 대한 간호, 지역보건활동, 「홈·헬프·서비스」에 종사하고 있

[제 1 표] 간호종사자수 (1972. 12. 31 현재)

	총 수	(그중) 부인(婦人) 수
간호종사자	229,058	198,594
간호원(사)	135,429	118,401
그중		
지역간호원(사)	9,560	9,528
정신병 간호원	11,893	5,936
소아간호원	18,418	18,418
간호보조원	30,494	25,301
유자격자	184,341	162,120
기타무자격자	44,717	36,474
그중		
정신병간호자	7,102	4,681
간호학생	53,109	46,012
간호원(사)과정	36,492	30,924
소아간호원 "	9,314	9,314
간호보조원 "	7,303	5,774

주: 「브레멘」은 병원근무자만 계산함.
 자료: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4. S. 77.

다. 의학의 발전에 따르는 의료의 다양화, 병원조직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에 의한 지역간호의 수요의 증대에 따라간호종사자의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그에 대응하는 종사자의 수는 아주 부족되고 있다. 1972년말 현재 간호종사자의 배반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수가 3,520병원, 70만병상인테 대하여 간호종사자는 무자격자를 포함하여 약 23만인에 지나지 않는다. (제 1 표 참조)

3. 자격요건

전문직으로서 간호 및 간호보조(정신병간호를 포함함)를 행하는 자는 간호요원법에 기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연방제 국가이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법령에 의하여 각방(各邦)의 보전국의 책임하에 행하여지고 있다. 과거에 직무수행상 신뢰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정신적, 신체적결함, 허약,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있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또 면허를 받은 전제가 불법인 경우 또는 면허요건을 결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받지 않고 간호원동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이 부과된다.

4. 양성제도

간호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간호요원양성·시험령에 정하여져 있는데 최근의 간호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호학교입학 허가연령의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간호요원법 개정법률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고 또 유럽 각국의 간호교육 수준의 표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간호교육에 관한 유럽협정”이 비준되고 있는바와 같이 독일에 있어서도 간호교육은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1) 교육기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원(간호사), 소아간호원, 간호보조원의 교육은 각각 국가에서 인정하는 간호학교, 소아간호학교, 간호보조원학교에서 행하여지고 교육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인정한 시설에서 실습이 행하여진다. 이러한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밖에 간호예비학교가 있어서 간호학교입학까지의 기간의 교육을 맡고 있다. 또한 유아보모등의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교원양성소에 코오스가 부설되어 있다.

(2) 입학자격요건

가. 간호원(간호사), 소아간호원

만17세에 달하고 ①실과(實科) 학교(Realschule) 기타 10년간의 학교교육 또는 실과학교에 상당하는 학교교육을 수료하였거나, ② 국민학교(Volksschule)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교육을 수료하고 3년의 간호예비학교를 수료하였거나, (이 경우 국민학교등 9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하였으면 2년으로 충분하고, 보모예비학교(Pflege-Vorschule)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학교교육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③ 국민학교 수료후 직업교육 수료시험(Lehrabschluss Bpüfung)에 합격하였거나 또는 ④ 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후 3년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의사의 증명서에 의한 취업의 신체적 적성의 증명, 경찰조사서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밖에 자기 또는 타인의 가정, 적당한 시설, 가정(家政) 학교(Hauswirtschaftliche Schule)에서 반년의 가정활동(家政活動)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① 간호예비학교에 통학한 경우, ② 간호보조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 가정학을 수료한 경우 또는 ④ 사회봉사활동(Das freiwilling Soziale Jahre)을 지원하여 종사한 경우에는 위의 가정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어도 좋다.

나. 간호보조원

만 17세에 달하였을 것, 국민학교 수료 또는 그와 동등한 학교 교육을 수료하였을 것, 의사의 증명서에 의한 신체적 적성의 증명, 경찰조사서의 제출등을 필요로 한다.

(3) 교육과정

가. 간호원(간호사)

3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각종의 유자격자가 새로운 과정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된다. 휴가에 의한 1년간 4주간의 중단, 질병, 임신에 의한 12주간이내의 중단은 그 기간에 산입된다. 동 과정은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강의는 최하 1,200시간(집단수업)이 필요하다.

교과내용은 ① 직업지식, 공민학, 법률지식 ② 해부학, 생리학, 생물학 ③ 약리학, ④ 영양학, ⑤ 위생학, 공중위생학, 보건교육, 건강관리, 세균학개론, 소독학, ⑥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⑦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방사선의학.

⑧ 내과학(전염병학 및 노인병학을 포함함), 외과학, 비뇨기과학, 부인과학, 신경과학, 정신과학, 피부병 및 성병과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소아과학, ⑨ 간호학(정신병, 임신부, 신생아, 소아간호를 포함함), ⑩ 재해방지, 응급처치이다.

실습은 내과, 외과, 부인과(남성의 경우에는 정형외과, 비뇨기과, 신경과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정신과에서 행하여지고 내과에 대하여는 최하 26주, 외과에 대하여는 최하 13주를 필요로 한다. 또 과정 최후의 반년 간에는 야근을 포함하여 2일간의 독립간호실습을 행한다. 실습은 항상 담당의사 또는 간호원의 감독하에 행하여지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구두시험 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취합되어 있어야 한다. 실습에 있어서는 휴양시간이 배려되어 있고 야근 후에는 10시간의 휴양시간이 보충되어 있다.

나. 소아간호원

교과내용이외에는 간호원(간호사)과 같다.

교과내용은 ① 직업지식, 공민학, 법률지식 ② 해부학,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본 생리학, 생물학, ③ 약리학, ④ 아동영양학, ⑤ 위생학, 공중위생학, 보건교육, 건강관리, 세균학개론, 소독학 ⑥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⑦ 소아병리학 ⑧ 소아간호학(정신병아, 정신장애아, 임신부, 신생아, 소아간호를 포함함) ⑨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방사선의학 ⑩ 재해방지, 응급처치이다.

실습의 경우 미숙아병동, 신생아병동, 전염병 병동에서의 실습이 필수로 되어 있다.

다. 간호보조원

기간은 1년이지만 휴가, 질병, 임신에 의한 4주간이내의 중단은 그 기간에 산입된다. 이 과정은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강의는 최하 250시간(집단수업)이 필요하다. 교과내용으로서는 ① 직업지식, 공민학, 법률지식 ② 해부학, 생리학 ③ 약리학 ④ 영양학 ⑤ 위생학, 보건교육, 소독학 ⑥ 병리학 ⑦ 간호학 ⑧ 재재해방지 응급처치이다.

(4) 졸업후 교육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다

시 지식을 몸에 익히고자하는 자를 위하여 자치에 종교단체, 적십자사, 대학, 간호협회등이 경영하는 “간호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그 종류는 간호관리자(총원장—總員長)가 되기 위한 1년 코스, 간호교원이 되기 위한 1년~1년반 코스, 병동원장(病棟員長)이 되기 위한 반년코스, 주임간호원이 되기 위한 3개월 강습, 기타 노인, 정신과, 부인과, 수술실, 중환자실간호등의 특별간호코스가 있다. 이에 참여한 자에게는 노동국에서 고용보증을 하여 주지만 수강기간의 취업은 금지된다.

(5) 양성수당 기타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기숙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나 전체 기숙의 방침이 점차 자유화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또 수업료, 교재비는 면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질병보험,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학교부담으로 되어 있다. 장학금은 학교에 따라 다르나 교회, 간호협회, 정부, 자치단체, 병원등의 각 단체가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각 조합과 연방, 방(邦), 자치단체간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간호보조학생에 대하여 월액 548마르크(약 101,900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기타의 학생에 대하여도 학업이 나아감에 따라 1년간에 100마르크(약 18,600원)씩 증액되고 있다고 한다.

5. 근로사정과 근로조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간호종사자의 수요는 증대하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인원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1970년 연방보건보고서”는 적어도 35,000인이 부족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그것을 긴급히 충족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책의 내용으로서는 ① 직업지도의 철저 강화 ② 교육개혁 및 교육의 재정적 강화 ③ 간호사의 증가를 위한 근로조건과 승진제도의 개선 ④ 「파트·타임어」의 도입 ⑤ 부인직장부귀의 장려 ⑥ 외국인 근로자의 모집의 계속을 들고 있다. 연방정부는 간호학교의 입학허가연령을 17세로부터 16세로 인하하는 간호요원법의 개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성립되지는 않았다. 최후의 항목에 관하여는 연방정부는 한

[제 2 표] 외국인 간호종사자수⁽¹⁾

(1972. 12. 31. 현재)

	총 수	(그중) 부인(2)	천체에 대한비율
	실 수	%	%
간호종사자	12,533	—	—
간호원(간호사)	6,790	94.4	6.1
(그중) 정신병간호원(사)	268	83.3	2.5
소아간호원	173	100.0	1.2
간호보조원	3,672	93.4	13.5
(그중) 정신병간호보조원	435	93.8	9.9
유아보호동	20	100.0	0.7
기타 무자격자	1,878	75.6	5.8
(그중) 정신병간호자	408	66.7	6.7
간호학생	1,278	—	—
간호원(사)과정	982	88.3	2.8
소아간호원과정	51	100.0	0.6
간호보조원과정	245	82.7	3.9
간호예비학생	88	100.0	2.0

주: (1) 베를린을 제외한 병원근무자만 계산함
(2) 노르트라인, 웨스트프라이렌은 제외함
자료: "Krankenhäuser 1972 Betten und Personal" Wirtschaft und Statistik, Nr. 2, 1974. S. 92

국과 계약을 맺어 연간 30인 전후의 교육을 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1만인이상의 외국인간호종사자, 학생이 독일국내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제2표 참조)

[제 3 표] 독일연방공화국, 방(邦) 및 시읍면 공무원간호원의 급여

(1974. 10. 1. 현재) (단위: 도이워·마르크)

급 여 그 름	주요 간호 직종	금 여 액	일지수당	대기수당	초과근무수당	특별근무수당
		(1974. 1~12) (월 액)	(1974. 10~) (월 액)	(1974. 10~) (시간액)	(1974. 10~) (시간액)	(1974. 10~) (시간액)
Kr XII	900인 이상의 부하를 가진 간호 관리자	1,830.60~2,474.24	251~358, 265~378	—	16.45	14.79
Kr XI	600인 이상의 부하를 가진 간호 관리자 또는 Kr XII의 대리자	1,694.77~2,312.73		—	15.48	13.95
Kr X	300인 이상의 부하를 가진 간호 관리자 또는 Kr XI의 대리자, 또는 간호보조원 학교, 간호학교의 교장	1,568.74~2,141.41		—	14.51	13.12
Kr IX	150인 이상의 부하를 가진 간호 관리자 또는 간호학교 주임 교관 등	1,452.49~1,982.34		—	13.64	12.36
Kr VIII	75인 이상의 부하를 가진 간호 관리자 기타	1,344.81~1,835.50		—	12.82	11.65
Kr VII	간호관리, 20인 이상의 부하를 가진 간호원(간호사) 기타	1,245.69~1,699.67		11.55	12.60	10.99
Kr VI	병동원장 기타	1,164.07~1,573.64		11.19	12.16	10.23
Kr V	일정한 역할을 가진 간호원(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원 기타	1,086.91~1,457.39		10.57	11.49	9.70
Kr IV	수술실근무의 간호원(간호사) 기타	1,015.25~1,349.70		10.03	10.90	9.22
Kr III	6개월까지의 실무경험을 가진 간호원(간호사) 또는 수술실근무의 간호보조원 기타	949.11~1,240.14		9.51	10.34	8.77
Kr II	간호보조원 기타	888.47~1,147.54	229~336, 243~357	9.02	9.90	8.34
Kr I	보모보조원 기타	832.25~1,062.65	8.57	9.31	7.95	

주: ① 시읍면단위. 1마르크=186.24원(1974. 9. 14현재)

자료: Vergütungstarifvertrag Nr. 12 zum BAT für den Bundes und für den Bereich der Tarifgemeinschaft deutscher Länder Vom 16 März 1974 및 Vergütungstarifvertrag Nr. 12 zum BAT für der Vereinigung der Kommunalen Arbeitsgeberverbände Vom 16 März 1974.

(1) 업무내용과 근무체제

병원의 간호조직은 총원장—원장—간호원—간호보조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팀을 편성하여 주로 병상에서의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데 의료의 근대화에서 따라 수술이나 긴급집중간호등도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다. 간호사의 업무내용으로서는 아침의 「베드·메이킹」, 세면보조, 배설조력, 입욕의 조력, 식사조력, 회진시의 드레싱(Dressing) 교환, 관장(灌腸), 도뇨(導尿), 좌약, 검은(적장), 수술전의 삭모(削毛), 환자의 운반, 사후처치 등에 대하여 의사, 원장(員長)의 지시하에 활동하고 있다.

근무체제로서는 간호원부족등도 있어 주로 2교대제로 하고 있으며 3교대제의 병원은 많지 않다. 그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는 요원의 확보가 문제로 되고 있으며 야간만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원이 고용되고 있다. 야간전문의 간호원의 경우 16시간 근무를 주 3회 하고 야간수당이 붙는다. 또 야간전문이 아닌 간호원이 야간을 하는 경우에도 1개월 정도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방식이 취하여지고 있어 근로밀도(勤勞密度)의 문제가 크게 관련되고 있다 하겠다.

(2) 근로시간, 휴가

공무원의 경우 표준근로시간은 3주간에 주평균 43시간으로 휴일은 1주간에 2일, 연차휴가는 20일부터 28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휴일, 축일에 근무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2주간에 2일의 휴일을 주면되고 그 1일은 일요일이어야 한다. 이들의 근무에는 대휴(代休)가 주어진다. 1년간의 근무시간중 야근은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되며 야근은 1개월이상 연속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휴일, 축일, 야간근무가 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은 표준근로시간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야간등의 대기근무, 긴급사태발생에 따르는 휴가의 축적에 대하여는 여분의 휴가가 주어진다.

(3) 급 여

공무원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급여체계가 결정된다. (제3표), 현행 단체협약에 의하면 간호원(간호사)의 초임급은 약 890마르크(약 165,000원), 부하를 900인 거느리고 있는 간호관리자(총원장)는 1830마르크(약 34만원)이다. 또 야근수당은 하루 밤 약 3,500원, 「파트·타이

머」는 약 8,700원으로 보고되고 있다(1973 현재) 그 밖에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1日 30마르크가 지급되고, 대기근무, 긴급근무에 대한 수당은 할증(割増)하여 지급된다. 또, 임지수당 기타도 지급된다. 간호직원의 급여는 그 근로조건에 비하여 다른 직종보다 낮다고 할 것이며 인원부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s Krankenschwester, des Krankenpflegers, und Kinderkranschwester(Krankentlegegesetz) Vom 20 September 1956, geandert Vom 3 September 1968, geandert Vom 4 Mai 1972 (BGBl. IS. 1443, 1965, BGBl. IS. 989, 1968, BGBl. IS. 753, 1972)
2. Ausbildungs-und Prüfungsordnung für Krönkenschwestern, Krankenpfleger und Kinderkranschwestern Vom 2 August 1966. (BGBl. IS. 462)
3. Ausbildungs-und Prüfungsordnung für Krankenpflege-helferinnen und Krankenpflegehelfer Vom 2. August 1966

● 西歐諸國의 경우

◇ 佛 蘭 西

1. 법 제

간호원에 관한 프랑스의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1) 공중위생법전 제4편 제2절(473조~486조)—간호원의 자격요건 및 취업상의 규칙을 정한 것.
- (2) 1961년 7월 17일의 명령—양성제도를 정한 것.
- (3) 1955년 8월 1일의 명령 간호원학교의 인가에 관한 규정
- (4) 1962년 2월 2일의 정령—공적병원에 있어서의 간호원등의 고용 및 승진의 제조건을 규정한 것.
- (5) 1972년 9월 5일의 정령 및 명령—간호학교의 수업연한을 종래의 2년으로 부터 2년반으로

연장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

2. 간호원의 종류와 인수

입수 가능한 최신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프랑스의 취업중인 간호원은 1970년말에 148,601인이다. 비공식통계에 의하면 1973년말에 약 163,000인, 주민 316인에 대하여 1인으로 되어 있다. 이 수는 WHO가 내놓은 적정기준(280인에 1인)을 하회하고 있다. 사실 간호원 부족의 문제는 심각하게 되어 있고 특히 공립병원에서는 필요한 간호원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병실의 1부 또는 전부를 폐쇄하지 않을 수 없는 곳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국가면허를 가진 보통의 간호원

외에 정신과 간호원 및 사나트리움 간호원이라고 불리우는 2종류의 직종이 있고 각각 자격요건 등이 약간 다른데 어느 것이나 “간호원”이라고 총칭되고 있다. 앞에 말한 간호원수는 이러한 3종을 합제한 것이다.

그 내역을 개술하면 163,000인중 약 10만인이 국가면허를 가지고 있는 정규의 간호원 135,000인정도가 정신과 간호원이다. 그 밖에 간호보조원이라 불리우는 직종의 것이 약 60,000인이 있다.

3. 자격요건

국가시험에 의하여 교부되는 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간호원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면허증을 얻기 위하여 국가시험의 수험을 희망하는 자는 공중위생·사회보장장관만이 인가한 학교에서 일정한 학업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학교에서 수업중인 학생 기타 특정한 자격을 가진 자는 한정된 영역에 대하여 간호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간호원 국가면허의 취득자이외에 간호원의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4년 11월 13일의 명령에 의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그 주요한 것은 전술한 정신과 간호원 및 사나트리움 간호원이, 전자는 정신병원간호원면허를 취득한 후에 정신병원에 한정하여 간호원으로서 일할 수 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신병원에 부속된 수업연한 2년의 양성학교에서 양성교육을 받은 후 최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후자의 사나트리움 간호원은 사나트리움에 한하여 간호원으로서 일할 수 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결핵요양소 부속의 양성학교(수업연수 15개월)에서 양성교육을 받은 후 최종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학교로부터 사나트리움 간호원증서를 수여받는다.

이 외에 1956년 1월 19일의 성령에 의하여 간호보조원이라고 하는 직종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것은 10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병원간호보조자로서의 적정증서로 받고 정규의 간호원의 감독하에서 일반적 위생간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간호원은 취업후 3개월이내에 직장이 소재하는 도의 지사에 대하여 자기의 면허증, 자격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직장을 타도로 변경한 경우 및 2년이상 휴직한 후 재취직한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4. 양성제도

(1) 양성기관

간호학교의 수는 1973년말현재 263교이고 그중 약 60교가 사립, 그외가 공립이다. 재학생수는 약 3만인, 교원수는 800인정도이다.

(2) 입학자격

간호원학교에의 입학자격으로서, (가) 대학 입학자격(바카로레어)등의 일정한 칭호를 취득한 자이든가, 또는 입학시험합격자일 것, (나) 신학기가 시작되는 년도의 10월 1일 현재 만 17세 이상일 것, (다) 신체상의 적성등이 요구된다.

(3) 수업연한

1972년 9월 5일의 각령에 의하여 종래의 2년에서 28개월로 연장되었다.

(4) 졸업후교육

간호원 국가면허 취득후에 다음과 같은 특정 직종을 전공하거나 간호에 관계되는 국가면허를 취득하는 길이 열려 있다.

① (가) 수술실전공간호원, (나) 공군(空軍)간호원, (다) 정신의학전공과정(이상은 간호원만이 전공할 수 있는 것)

② (가) 마취및조간호원, (나) 프에르트우리스(육아전문직), (다) 공중위생전공과정(이상은 간호원이외의 관련직종의 자로 전공할 수 있는 것)

③ (가) 조산원, (나) 맛싸아지, 킨베지테라피스트(물리요법사), (다) 피부과 보조직, (라) 페디큐어(발의 치료사) (이상은 간호원의 자격이 있으면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것)

④ 한파기술밀조원(간호원면허가 입학자격의 1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밖의 간호원의 상급학교로서 간부학교(1972년 10월 현재 12교) 및 국제고등 간호교육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간부학교의 입학자격으로서는 3

년 이상의 간호원으로서의 직업경험이 요구되고 입학후에는 다음의 3코오스중 하나를 전공한다. ① 간호교원양성코오스, ② 관리간호원양성코오스.

이들은 8개월의 연수를 받은 후 최종시험에 합격하면 각각의 적성증서가 수여된다.

국제고등간호교육학교는 고급간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WHO 및 리온시(市) 양호원(養護院)의 협력으로 설치된 것이다. 수업연한은 2년이고 입학자격은 간호의 실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앞에 말한 간부학교 졸업자로서 약 3년 이상의 직무경험을 가진 지원자중에서 선발시험에 의하여 입학이 인정된다고 한다. 제2학년을 종료하면 대학 졸업자와 같은 자격이 부여된다.

5. 근로조건

(1) 급 여

1973년 12월 1일 현재 각 부문의 간호원의 급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립병원

초임급: 월액(실제 수령액) 1,590 프랑(약 13만원) (주 40시간 근무의 급여의 14%에 해당하는 주택수당을 포함함)

25년근속자: 월액(실제 수령액) 2,350프랑(약 256,000원) (주택수당은 위와 같음)

② 공적부조(公的扶助)부문

초임급: 월액(실제 수령액) 1,700프랑(약 185,000원) (앞에 말한 주택수당 및 13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25년근속자: 월액(실제 수령액) 2,500프랑(약 273,000원) 주택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은 위와 같음)

③ 사립병원

초임급: 월액(실제 수령액) 1,480프랑 내지

1,600프랑(사용자에 따라 다름)

④ 간호원학교장(대학입학자격취득후 6개월의 취학을 요한다)

월액(실제수령액) 2,500프랑(약 273,000원)

이상의 급여외에 보통의 간호원에게는 사후처리수당(死後處置手當) (1.10프랑) 야근수당(보통간호원 1시간당 1프랑, 전문간호원 1.40프랑) 화구입수당(靴購入手當—연간 50프랑) 등이 있는 데 어느 것이나 그 금액이 근소한 점이 문제되고 있다.

다음에 간호보조자의 급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⑤ 공립부문

초임급: 월액(실제 수령액) 1,300프랑(약 142,000원)

25년근속자: 월액(실제 수령액) 1,800프랑(약 196,000원) 내지 1,900프랑(약 207,000원)

⑥ 민간부문

초임급: 월액(실제 수령액) 1,200프랑(약 131,000원) 내지 1,300프랑(약 142,000원)

(2) 근로시간등

간호원에게도 원칙적으로 주에 2일의 휴가와 27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손의 부족때문에 생각한 것처럼 휴가를 얻을 수 없고 주 45시간이상의 근로를 강요당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간호원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 1973년말에 공중위생·사회보장장관이 명백히 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간호원의 이직율은 취직후 3년간에 25%, 6년간에 40%에 이르고 있다. 또 취업중의 부인 전체의 평균 취업기간은 23년인데 대하여 간호원의 경우는 15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看護教育」1974. 10. 11月號 합병호

